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63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송옥주 · 이병진 · 윤준병
이수진 · 전종덕 · 황명선
황운하 · 문대림 · 김남희
김태년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

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출 방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9조의2(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출 방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第92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第92條(罰則) ----- -----

罰金에 處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u>3.</u>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	---